

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8] <개정 2015.3.24.>

지도·단속실적보고방법(제24조제2항 관련)

업무내용	보고횟수	보고기일	보고자
1.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·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	연 2회	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2.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·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	연 2회	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3. 가축분뇨위탁·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·단속실적	연 2회	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4.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·단속실적	연 2회	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5. 처리시설등설계·시공업자에 대한 지도·단속실적	연 2회	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6.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·단속실적 및 조치사항	수시	사고발생시	시·도지사